

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안 번호	883
----------	-----

2000. 2. 16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(법률 제6002호) 및 동법 시행령 (대통령령 16672호) 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보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을 보면

- 본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 1~2호중 「회의수당」을 「회기수당」으로 하고
- 제8조 제1항중 「구좌」을 「계좌」하며
- 제11~15조의 「심의회」를 「심의회」로 하는 것으로써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등의 보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의원 사기양양을 위한 매우 타당하고 적합한 조치라 판단됩니다.